



의안번호	제 2014 - 19 호
보 고 연 월 일	2014. 9. 15. (제58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83차 전체 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4. 업무방해범죄 형량범위 논의 결과	1
5. 게임물범죄 형량범위 논의 결과	6
6. 손괴범죄 형량범위 논의 결과	23
7. 권리행사방해범죄 형량범위 논의 결과	31
8. 장물범죄 유형분류 논의 결과	33

<별첨자료>

강동혁,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Ⅱ”

황병헌, “게임관련법위반죄 형량범위 설정 검토”

강동혁, “손괴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Ⅲ”

황병헌, “권리행사방해범죄 형량범위 설정 검토Ⅱ”

강동혁, “장물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Ⅲ”

I. 제83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4. 8. 27.(수) 15:00 ~ 18:5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1명)

- 수석전문위원, 강동혁, 김현아, 노수환, 박지선, 범현, 오기찬, 이진국, 최준혁, 황병헌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업무방해, 게임물, 손괴,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형량범위) 검토
- 장물범죄 양형기준안(유형분류) 검토

4. 업무방해범죄 형량범위 논의 결과

가. 업무방해 유형

-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업무방해	5년 ↓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1) 검토

- 법정형이 동일하고 행위 유형이 유사한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참조

(가) 공무집행방해 범죄 형량범위 설정 시 고려한 사항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6월 - 1년4월	1년 - 4년
2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 평균형량

- 공무집행방해 6.66월, 위계공무집행방해 8.59월

○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경우 범행 과정에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상당 정도 포섭할 수 있게 가중영역의 상한을 높게 설정

(나) 업무방해 형량분포

단위: 명, %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18	24		
업무방해	수	1	4	61	5	100	39	23	12	1	1	247	6.52
	비율	0.4	1.6	24.7	2.0	40.5	15.8	9.3	4.9	0.4	0.4	100.0	

○ 업무방해의 평균형량은 징역 6.52월

○ 징역 6월이 전체의 40.5%로 가장 많고, 징역 4월이 24.7%로 다수의 비율을 차지. 징역 1년 초과 사건도 존재(징역 1년6월 1건, 징역 2년 1건)

(다) 구체적 검토

■ 기본영역 : 6월-1년6월

-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양형기준을 참조하되(법정형 5년 이하 징역으로 동일), 업무방해의 경우 위계/위력/컴퓨터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하나의 유형으로 정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축성 있는 양형이 가능하도록 기본영역의 폭을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형량범위를 전부 포섭하도록 설정

■ 가중영역 : 1년-3년6월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중상해를 포섭하기 위해 실무례에 비해 가중영역 상한을 매우 높게 설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방해의 가중영역 상한은 공무집행방해보다는 낮게 위계공무집행방해보다는 높게 그 중간 지점으로 정함
-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위력 업무방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모에 의한 위계 업무방해(입시부정, 비자발급)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가 큰 행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반영해 실제 형량 분포보다 규범적으로 형량범위를 상향 조정

■ 감경영역 : 8월 이하

- 기본영역에 70.9%, 감경영역에 85%의 사건이 포섭

나. 경매·입찰방해 유형

○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경매·입찰방해	2년 ↓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건설 입찰방해	5년 ↓	6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4년

(1) 일반 경매·입찰방해

(가) 형량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18	24		
경매방해	수	0	0	17	3	63	31	26	12	1	1	154	7.50
	비율	0.0	0.0	11.0	1.9	40.9	20.1	16.9	7.8	0.6	0.6	100.0	
입찰방해	수	0	0	1	0	17	7	6	11	1	0	43	8.65
	비율	0.0	0.0	2.3	0.0	39.5	16.3	14.0	25.6	2.3	0.0	100.0	
전체	수	0	0	18	3	80	38	32	23	2	1	197	7.75
	비율	0	0	9.1	1.5	40.6	19.3	16.2	11.7	1	0.5	100.0	

- 경매·입찰방해의 평균형량은 7.75월. 징역 6월이 선고형의 40.6%
- 경매·입찰방해죄는 업무방해죄의 특별죄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오히려 법정형은 가벼운데, 선고된 형의 평균형량은 경매·입찰방해죄(7.75월)가 업무방해죄(6.52월)보다 높음

(나) 구체적 검토

■ 기본영역 : 6월-1년

-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사이에 선고형이 주로 분포(87.8%)하고 있고, 징역 6월 미만의 경우는 10.6%에 불과하며, 징역 1년 초과인 경우는 1.5%에 불과

■ 감경영역 : 8월 이하

- 실무례의 70.5% 포섭

■ 가중영역 : 10월-2년

-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보다 평균형량, 형량분포구간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가중영역의 상한을 법정형 상한인 2년으로 정함
- 실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음

(2) 건설 입찰방해

(가) 형량분포¹⁾

단위: 명, %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18	2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수	0	0	0	0	1	10	1	8	16	5	41	14.63
	비율	0	0	0	0	2.4	24.4	2.4	19.6	39.0	12.2	100.0	

- 평균형량은 14.63월
- 징역 1년6월이 선고형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역 1년 ~ 2년의 합계가 선고형의 70.8%에 이름
-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은 법정형이 동일하고 행위태양이 유사한 공무집행방해와 비교할 때 평균형량(공무집행방해 6.66월, 위계공무

1) 판결문검색시스템 통한 조사 결과 2011. 1. 1. ~ 2013. 12. 31. 선고된 징역형 사건 41건 분석

집행방해 8.59월) 등 형량분포가 월등하게 높은 편이고,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에 비해 형량분포가 상당히 높은 편임

(나) 구체적 검토

■ 기본영역 : 10월-2년

- 평균형량, 형량분포 등 고려 ⇨ 선고형의 70.8% 포섭

■ 감경영역 : 6월-1년

- 징역 6월 미만 선고 사례 없는 점 고려 하한을 6월로 정함
- 상한은 기본영역과의 중첩범위 고려

■ 가중영역 : 1년6월-4년

- 기존에 선고된 형량 중 가장 높은 형이 징역 2년이나, 대형 국책 건설사업과 관련한 입찰 비리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건설공사의 입찰 공정을 특별히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가중영역 상한을 법정형 상한에 근접할 정도로 높게 설정
- 건설 입찰방해의 경우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보다 평균형량 등의 형량분포가 월등히 높으므로, 이를 충분히 반영

※ 다만, 건설입찰방해의 가중영역 상한을 4년으로 정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보충의견 있음(범헌 위원)

- 건설입찰방해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담합에 의해 야기되는 발주자 등의 경제적 손실인데, 건설입찰방해가 부실공사, 공공안전 위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만으로 무거운 형량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제기
- 이에 대해 건설입찰방해는 부패, 효용성 저해, 안전사고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는 출발점의 범죄이므로, 부실공사, 안전사고 등의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전 단계에서 양형기준을 엄정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

다. 소결 - 검토결과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01 업무방해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업무방해	5년 ↓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02 경매.입찰방해 유형

유 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경매 · 입찰방해	2년 ↓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건설 입찰방해	5년 ↓	6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4년

5. 게임물 범죄 형량범위 논의 결과

가. 양형위원회 56차 회의에서 논의된 유형분류

■ ① 도박장소 개설 등 (제1유형)

유형	구 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복권 · 복표 발매	복권 발행	복권법 34조1항1호	3년 ↓, 2000만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 발매	형법 248조 1항	5년 ↓, 3000만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 발매를 중개	형법 248조 2항	3년 ↓, 2000만 ↓
2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 목적 도박장소나 공간 개설	형법 제247조	5년 ↓, 3000만 ↓
3	사행성 게임장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투전기, 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	사행법 30조1항1호	5년 ↓, 5000만 ↓
		게임물관련사업자가 도박·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	게임법 44조1항1호, 28조2호	5년 ↓, 5000만 ↓
		게임물관련사업자가 경품제공 등 사행성 조장	게임법 44조1항1의2호,	5년 ↓, 5000만 ↓

유형	구 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28조3호	
		사행성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법 44조1항2호, 32조1항4호	5년 ↓, 5000만 ↓
		무허가 카지노업	관광진흥법 81조1호	5년 ↓, 5000만 ↓

■ ② 사설경마 등 (제2유형)

유형	구 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사설경마 등	경마 시행	한국마사법 50조1호, 48조1항	5년 ↓, 5000만 ↓
		승마투표 유사행위로 재물 등 지급	한국마사법 50조1호, 48조2항1호	5년 ↓, 5000만 ↓
		외국 경주에 전자적 방법 이용 승마투표행위 등	한국마사법 50조1호, 48조3항2호	5년 ↓, 5000만 ↓
		우권 등 발매, 적중자에게 금전 지급하는 소싸움 시행	전통소싸움법 26조1항1호	3년 ↓, 2000만 ↓
		승자투표권 등 발매, 적중자에게 금전 지급하는 경주 시행 등	경륜·경정법 27조1항1호, 제24조	3년 ↓, 1000만 ↓
2	사설스포츠토토 등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국민체육진흥법 47조2호, 26조1항	7년 ↓, 7000만 ↓
		정보통신망 이용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시스템 이용제공	국민체육진흥법 48조4호, 26조2항1호	5년 ↓, 5000만 ↓

■ ③ 불법게임물 유통 등 (제3유형)

유형	구 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유통	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법 45조4호, 32조1항2호	2년 ↓, 2000만 ↓
2	사행성게임물 등 유통	미등급 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법 44조1항2호, 32조1항1호	5년 ↓, 5000만 ↓

유형	구 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사행성 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법 44조1항2호, 32조1항4호	5년 ↓, 5000만 ↓
		투전기, 사행성유기기구 판매, 판매 목적 제조·수입	사행법 30조1항2호	5년 ↓, 5000만 ↓
3	유사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유통	정보통신망 이용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국민체육진흥법 48조4호, 26조2항1호	5년 ↓, 5000만 ↓

■ ④ 무허가 영업 등 (제4유형)

유형	구 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무등록 게임제작업 등	무등록 게임제작·배급업	게임법 45조2호, 25조	2년 ↓, 2000만 ↓
		무허가·무등록 게임제공업	게임법 45조2호, 26조1항, 2항, 3항	2년 ↓, 2000만 ↓
2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 및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무허가 사행행위영업	사행법 30조2항1호	3년 ↓, 2000만 ↓
		무허가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사행법 30조2항3호	3년 ↓, 2000만 ↓

■ ⑤ 게임물 이용제공 관련 금지행위 등 (제5유형)

유형	구 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등	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법 45조4호, 32조1항2호	2년 ↓, 2000만 ↓
2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등 및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법 44조1항2호, 32조1항1호	5년 ↓, 5000만 ↓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게임법 44조1항2호, 32조1항7호	5년 ↓, 5000만 ↓

나. 형량범위 설정검토

○ 모든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일치

(1) 도박장소 개설 등 (제1유형)

(가) 1-3유형(사행성게임장 영업/무허가 카지노업)²⁾

■ 형량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	24		
사행행위 범위반	제30조 1항 1호	수	1	0	8	0	47	0	64	34	22	4	1	4	0	0	185	8.52
		비율	0.5	0.0	4.3	0.0	25.4	0.0	34.6	18.4	11.9	2.2	0.5	2.2	0.0	0.0	100.0	
게임산업 범위반	제44조 1항 1호, 28조 2호	수	0	0	4	0	25	0	24	13	14	0	0	0	1	0	81	8.35
		비율	0.0	0.0	4.9	0.0	30.9	0.0	29.6	16.0	17.3	0.0	0.0	0.0	1.2	0.0	100.0	
	제44조 1항 1의2호, 28조3호	수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10.0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제44조 1항 2호, 제32조 1항 1, 4호	수	0	0	14	1	66	0	62	44	21	3	2	3	0	0	216	8.21
		비율	0.0	0.0	6.5	0.5	30.6	0.0	28.7	20.4	9.7	1.4	0.9	1.4	0.0	0.0	100.0	

○ 선고형량은 6월, 8월, 10월이 세부 죄명별로 각 78.7%, 76.5%, 100%, 79.7%의 비중을 점함

○ 무허가 카지노업(관광진흥법위반)에 대한 선고 형량은 법원 판결 문검색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대부분 6월 ~ 1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년6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음

■ 검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3	사행성 게임장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 기본영역의 형량범위를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같은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제2유형(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2) 이해의 편의를 위해 형량범위 설정의 기준점이 되는 유형부터 설명

<마약 투약·단순소지 제2유형(대마 등 투약·소지)>과 동일하게 8월 - 1년6월로 설정하고, 감경영역의 상한은 10월로, 가중영역의 상한은 3년6월로 설정

- 영업규모를 양형인자로 반영하고, 영업규모 또는 범죄수익규모가 큰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 대하여 엄정한 형을 선고하도록 가중영역의 상한을 다소 높게 설정
- 선고사례의 69.8%, 62.9%, 100%, 62.5%가 기본영역에 포섭

(나) 1-1유형(복권·복표 발매)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1	복권·복표 발매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 1-3유형을 기준으로 하되, 기본영역의 하한과 가중영역의 상한을 다소 하향 조정
- 실제 기소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양형통계를 기초로 한 형량 범위 설정은 불가능
- 복권법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인 점, 구성요건이 유사한 무허가 사행 행위영업(사행법 제30조 2항 1호)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인 점 등 고려

(다) 1-2유형(도박장소개설 등)

■ 형량분포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4	36		
도박	도박개 장	수	6	68	5	378	1	298	1	197	130	11	2	0	16	1	5	1	1120	8.17
		비율	0.5	6.1	0.4	33.8	0.1	26.6	0.1	17.6	11.6	1.0	0.2	0.0	1.4	0.1	0.4	0.1	100	
	도박장 소개설	수	0	2	0	0	0	3	0	2	3	1	0	0	1	0	0	0	12	10
		비율	0.0	16.7	0.0	0.0	0.0	25.0	0.0	16.7	25.0	8.3	0.0	0.0	8.3	0.0	0.0	0.0	100	
	전체	수	6	70	5	378	1	301	1	199	133	12	2	0	17	1	5	1	1132	8.19
		비율	0.5	6.2	0.4	33.4	0.1	26.6	0.1	17.6	11.7	1.1	0.2	0.0	1.5	0.1	0.4	0.1	100	

- 2013. 4. 5. 형법 개정으로 징역형의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상

향조정됨

- 선고형량은 6월, 8월, 10월이 77.6%의 비중
- 제1-3유형과 평균 선고형량은 비슷하지만, 제1-3유형과 달리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있음
 - 해외에 서버를 두는 등 지능적·조직적인 범행으로 막대한 범죄 수익을 올린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경우임

■ 검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2	도박장소 등 개설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4년

- 1-3유형을 기준으로 하되, 가중영역 상한을 4년으로 상향
 - 제1-3유형과 비교할 때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있는 점, 구성요건의 특성상 다양한 범죄 유형이 포섭될 수 있고 특히 지능적·조직적 범행, 다수의 도박 참여자, 고액의 범죄수익 등으로 엄벌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고려

(2) 사설경마 등 (제2유형)

(가) 사설경마 등(2-1유형)

■ 형량분포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4	36		
한국마사회법 위반	수	0	10	1	60	0	74	2	66	38	2	0	1	15	0	6	0	275	9.41
	비율	0.0	3.6	0.4	21.8	0.0	26.9	0.7	24.0	13.8	0.7	0.0	0.4	5.5	0.0	2.2	0.0	100	

- 마사회법위반 사건의 선고형량은 6월, 8월, 10월이 72.7%의 비중
- 경륜·경정법위반 사건은 법원 판결문검색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선고형은 6월 ~ 1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1년6월 이상의 실형(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도 수건 발견됨

- 한국마사회법위반죄(5년 이하)와 경륜·경정법위반죄(3년 이하) 간 법정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고형의 유의미한 편차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전통소싸움법위반죄는 실제 선고 사례가 발견되지 않음

■ 검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1	사실경륜 등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2	사실경마 등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 제1-3유형(사행성 게임장 영업/무허가 카지노업)과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하되, 법정형이 3년 이하인 범죄(경륜·경정법위반, 전통소싸움법위반)를 별도 중·소유형으로 분리하여 가중영역의 상한을 법정형의 상한에 일치시킴

■ 경륜·경정법위반죄 양형기준 적용범위 일부 제외

- 한국마사회법은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제48조 2항 1호)와 “영리 목적으로 마권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제48조 3항 1호)를 따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제26조 1항)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제26조 2항 3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후자의 구매대행 등은 양형기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음
- 한편 경륜·경정법은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제24조)를 한 조항에

서 규정하고 있음

-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양형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전문위원단 의견일치
- 한국마사회법(제48조 3항 1호), 국민체육진흥법(제26조 2항 3호)의 유사한 해당범죄가 양형기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점, 실제 발생 빈도가 낮아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적은 점 등 고려

(나) 사설스포츠토토 등(2-2유형)

■ 형량분포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4	36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수	0	1	0	11	0	17	0	6	1	1	0	0	0	0	0	0	37	7.89
	비율	0.0	2.7	0.0	29.7	0.0	45.9	0.0	16.2	2.7	2.7	0.0	0.0	0.0	0.0	0.0	0.0	100	

- 선고형량은 6월, 8월, 10월이 91.8%의 비중

■ 검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2	사설스포츠토토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 1-2유형(도박장소 등 개설)을 기준으로 하되, 형량범위를 다소 상향 조정
- 주된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인 점 반영
- 사설스포츠토토는 사행성 게임장, 사설경마 등에 비해 일반인·청소년 등의 접근이 쉬워 피해가 크고, 조직적인 승부조작 범행 등과 연계하는 경우 등 엄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 참작
- 형량 분포 상 선고사례의 67.6%가 기본영역에 포섭됨

(3) 불법게임물 유통 등 (제3유형)

(가)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유통(3-1유형)

■ 형량분포

- 법원 판결문검색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6월 ~ 1년6월 사이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보임
- 법정형의 차이(3-1유형 : 2년 이하, 3-2유형 : 5년 이하)에도 불구하고 3-2유형과 유의미한 형량의 편차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검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3-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유통	- 8월	6월 - 1년2월	10월 - 2년

- 5-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법정형 2년 이하로 동일)의 형량범위와 동일하게 설정
- 제1-3유형(사행성 게임장 영업) 및 제5-1유형 범죄의 물적인 도구를 제공하는 범죄로서, 불법게임장영업의 억제라는 측면과, 실제 법정형에 비추어 높은 형이 선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나) 사행성게임물 등 유통(3-2유형)

■ 형량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	24		
사행행위 법위반	제30조 1항 2호	수	0	0	0	0	0	0	1	2	1	0	0	1	0	0	5	11.60
		비율	0.0	0.0	0.0	0.0	0.0	0.0	20.0	40.0	20.0	0.0	0.0	20.0	0.0	0.0	100.0	

- 사행행위법위반의 평균형량은 11.60월
- 미등급·사행성 게임물 유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법위반범죄를 법원 판결문검색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선고형은 6월 ~ 1년6월 사이에 분포하고 있음
- 구성요건 상 사행성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실제

사건은 대부분 사행성을 수반하는 사례들

■ 검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3-2	사행성게임물 등 유통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 1-3유형(사행성 게임장 영업/무허가 카지노업)과 동일하게 설정
 - 1-3유형과 법정형이 같고, 사례가 많지 않아 유통범죄를 규범적으로 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고려

(다) 유사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유통 (3-3유형)

■ 형량분포

- 실제 선고 사례가 매우 적고, 법원 판결문검색시스템으로는 1년, 1년/2년(2건), 8월, 8월/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음
 - 제3-2유형과 비교하여 범행 형태가 독립적·조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 검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3-3	유사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유통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 3-2유형과 동일하게 설정
 -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으로 동일하고, 구성요건이 유사한 점 고려
 - 법정형과 범행 형태 등에 비추어 3-2유형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3-3유형은 불법 스포츠토토 범죄의 도구를 제공하는 범죄로서 불법영업의 억제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므로 2-2유형(사설스포츠토토 등)과 동일하게 형량범위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 있음(김현아 위원)

■ 추가검토 : 3-2유형, 3-3유형 통합

- 구성요건이 유사하고 형량범위도 동일

(4) 무허가 영업 등 (제4유형)

(가) 무등록 게임제작업 등 (4-1유형)

■ 형량 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	24		
게임산업 법위반	제45조 2호	수	0	0	1	0	3	0	2	2	1	1	0	1	0	0	11	9.27
		비율	0.0	0.0	9.1	0.0	27.3	0.0	18.2	18.2	9.1	9.1	0.0	9.1	0.0	0.0	100.0	

- 허가나 등록 없이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행성게임물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됨
 - 다만, 불법게임장에 공급되는 사행성게임물을 제작하였다는 범죄 사실을 위 조항을 적용하여 1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음
 - 일부 구성요건에는 등급 미분류 게임물의 제작 또는 공급도 그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음

■ 검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4-1	무등록 게임제작업 등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 법정형이 2년 이하로 같은 공문서 등 부정행사죄 양형기준(-6월 / 4월-10월 / 6월-1년6월)를 참고하되, 가중영역의 하한을 제1유형 내지 제3유형의 기본영역 하한과 같은 8월로, 가중영역의 상한을 법정형 상한인 2년으로 설정
 - 단순 무허가·무등록 영업은 그 불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사

행성 또는 게임 내용의 불법성이 수반된 경우 양형인자의 적절한 배치에 의한 가중영역 포섭으로 적절한 양형 구간을 확보할 수 있음 ⇨ 법정형이 동일한 3-1유형, 5-1유형보다는 형량범위를 다소 낮게 설정

(나)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 및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4-2유형)

■ 형량 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	24		
사행행위 법	제30조 2항 1호	수	0	0	0	0	4	0	3	0	0	0	0	0	0	0	7	6.86
		비율	0.0	0.0	0.0	0.0	57.1	0.0	42.9	0.0	0.0	0.0	0.0	0.0	0.0	0.0	100.0	

- 실제 선고된 사례들은 낚시터 등에서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한 경우 등이 대부분으로 범행 유형이 한정되어 있고 불법성도 비교적 약한 사안들임
- 다만, 불법게임장 운영 행위를 위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 경우도 있음

■ 검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4-2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 및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 1-1유형(복권·복표발매)보다 형량범위를 하향 조정
- 1-1유형과 구성요건이 유사하기는 하나, 1-1유형보다 법정형이 낮고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법정형이 3년 이하로 동일한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 참작

(5) 게임물 이용제공 관련 금지행위 등 (제5유형)

(가)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등 (5-1유형)

■ 형량 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	24		
게임산업 법	제45조 4호	수	0	1	8	2	58	0	71	31	19	1	0	4	0	2	197	8.29
		비율	0.0	0.5	4.1	1.0	29.4	0.0	36.0	15.7	9.6	0.5	0.0	2.0	0.0	1.0	100.0	

- 선고형량은 6월, 8월, 10월이 81.1%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
- 법정형의 차이(5-1유형 : 2년 이하, 5-2유형 : 5년 이하)에도 불구하고 제5-2유형과 사이에 선고형의 유의미한 편차를 확인하기 어려움
- 구성요건 상 사행성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실제 사건은 대부분 사행성을 수반하는 사례들임

■ 검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5-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등	- 8월	6월 - 1년2월	10월 - 2년

- 1-3유형을 기준으로 법정형의 차이를 고려해 형량범위를 하향조정하되, 법정형이 같은 <배임증재죄 중 1억 원 이상 유형> 등의 형량범위(6월-1년 / 10월-1년6월 / 1년-2년)를 참조하여 설정
- 실무상 사행성 게임장영업의 상당수가 위 조항으로 처벌되고 있고, 제5-2유형과 형량분포에도 차이가 없는 점 고려해 엄정한 형량범위 설정

(나)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등 / 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업 (5-2유형)

■ 형량 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	24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	24		
게임산업 법	제44조 1항 2호,	수	0	0	14	1	66	0	62	44	21	3	2	3	0	0	216	8.21
	제32조 1항 1, 4호	비율	0.0	0.0	6.5	0.5	30.6	0.0	28.7	20.4	9.7	1.4	0.9	1.4	0.0	0.0	100.0	
	제44조 1항 2호,	수	0	0	14	5	63	1	52	38	26	1	1	4	0	1	206	8.25
	제32조 1항 7호	비율	0.0	0.0	6.8	2.4	30.6	0.5	25.2	18.4	12.6	0.5	0.5	1.9	0.0	0.5	100.0	

○ 선고형량은 6월, 8월, 10월이 세부죄명별로 각 79.7%, 74.2%의 비중을 점함

-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등은 구성요건 상 사행성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실무례의 대부분은 사행성을 수반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환전·환전알선 영업 등은 사행행위에 수반되는 환전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생산된 게임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이 있고, 이러한 유형은 게임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되기도 함

■ 검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5-2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5-3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등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 제5-2 유형을 제5-2유형(환전·환전알선 등)과 제5-3유형(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등)으로 다시 세분하여, 제5-3유형은 제1-3유형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제5-2유형은 1-3유형보다 기본영역의 하한과 감경영역을 각 하향 조정

-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등 범죄는 제1-3유형과 법정형의 차이가 없고, 실무상 사행성이 수반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므로 제1-3유형

과 동일하게 설정함이 타당함

- 환전 등 범죄는 사행성이 수반되지 않는 범죄 유형을 포함하므로 적정한 양형을 위해 형량 구간의 하한을 다소 확대할 필요

(6) 추가검토 : 사행성게임물 이용제공 등 범죄의 유형 재분류

(가) 검토 필요성

- 기존 유형분류안에 따른 분류
 -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이용제공(게임법 제44조 1항 2호, 제32조 1항 4호) ⇒ 제1-3유형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게임법 제44조 1항 2호, 제32조 1항 1호) ⇒ 제5-2유형
- 처벌조항이 같고 유사한 구성요건을 다른 유형으로 분류한 논거는 등급 미분류 게임물은 사행성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도박장소 개설 등 유형(제1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임
 - 같은 이유로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도 함께 별도의 유형(제5유형)으로 분류하였음
- 다만, 실무에 있어서는 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이 사행성을 수반하는 경우(범행 형태와 죄질이 거의 유사하고, 다만 공소 제기된 적용법조가 상이할 뿐임)가 대부분이므로,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이에 따라 사행성게임물 이용제공과 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을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아래 3안으로 의견일치

- 제1안 : 사행성게임물 이용제공을 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과 함께 제5-2유형으로 분류
 - 처벌조항이 동일하고, 실무상 범행 형태가 거의 유사한 두 범죄를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 물>,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을 하나의 대유형(제5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과 직관성을 높임
- 제2안 : 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을 사행성게임물 이용제공과 함께 제1-3유형으로 분류
 - 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이 대부분 사행성을 수반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사행성 게임장 영업 유형에 포함시킴
 - 제3안 : 기존 제1-3유형 범죄 중 게임산업법위반 범죄 전부를 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과 함께 제5-2유형으로 분류
 - 게임산업법위반 범행 전체를 하나의 대유형(제5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과 직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임
 - 도박·사행행위의 주재 또는 방치(게임법 제44조 1항 1호), 경품 등 사행성 조장(게임법 제44조 1항 1의2호) 등도 본질적으로 사행성게임물 이용제공과 다르지 않고 형량범위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고려
 - 제4안 : 기존 분류안 유지
 - 사행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함

다. 소결 - 검토결과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01 도박장소 개설 등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복권·복표 발매	3년↓, 5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2	사행성 유기게임장 ³⁾ /무허가 카지노업 ⁴⁾	5년↓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3	도박장소 등 개설	5년↓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4년

3) 게임산업법상의 사행행위 관련 범죄를 5유형으로 이동시킴에 따라 유형의 명칭을 기존 '사행성 게임장 영업/무허가 카지노업'에서 '사행성 유기게임장/무허가 카지노업'으로 변경

4) 당초 '사행성 게임장 영업/무허가 카지노업'이 1-3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기존 1-2유형의 '도박장소 등 개설'의 형량범위가 더 무겁게 정해진 것을 고려해 '사행성 유기게임장/무허가 카지노업'으로 변경

02 사설경마 등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사설경륜 등	3년 ↓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사설경마 등	5년 ↓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3	사설스포츠토토 등	7년 ↓, 5년 ↓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03 불법게임물 유통 등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유통	2년 ↓	- 8월	6월 - 1년2월	10월 - 2년
2	사행성게임물 등 유통 / 유사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유통	5년 ↓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04 무허가 영업 등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무등록 게임제작업 등	2년 ↓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2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 및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3년 ↓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05 사행성·불법게임물 영업 5)

- 노업'을 1-2유형으로 옮기고 '도박장소 등 개설' 유형을 1-3유형으로 이동시킴. 형량범위 설정의 기준이 된 '사행성 유기게임장/무허가 카지노업' 유형(1-2유형)에 음영표시를 함. 이하 1-2유형과 형량범위가 동일한 범죄에도 음영표시
- 5) 기존 1유형의 게임산업법상 사행행위 관련 범죄가 5-3유형으로 이동됨에 따라 5유형의 명칭을 기존 '게임물 이용제공 관련 금지행위 등'에서 '사행성·불법게임물 영업'으로 변경하고, 5-3유형을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으로 명명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등	2년 ↓	- 8월	6월 - 1년2월	10월 - 2년
2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5년 ↓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3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5년 ↓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6. 손괴범죄 형량범위 논의 결과

가. 양형위원회 재검토 지시사항

(1) 지난 전문위원 제82차 전체회의 논의결과

01 일반적 기준

유 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등	3년 ↓	-6월	4월-10월	8월-1년6월
2	공익건조물파괴	10년 ↓	4월-1년	8월-2년	1년6월-4년
3	지정문화재손상 등	2년 ↑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6월-4년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3년 ↑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02 상습·누범·특수손괴

유 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누범·특수손괴등	1년 ↑	4월-10월	8월-1년6월	1년-2년
2	상습특수·누범특수손괴	2년 ↑	6월-2년	1년-3년	2년-4년
3	문화재특수손상	↑ 2년~45년 ↓ / ↑ 3년~45년 ↓	1년-3년	2년-4년	3년-6년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 치상	1년 ↑	6월-1년	10월-2년	1년6월-3년
2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 치사	3년 ↑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3	문화재특수손상치상	무기, 5년 ↑	2년6월-4년	3년-6년	5년-8년
4	문화재특수손상치사	사형, 무기, 5년 ↑	2년6월-5년	4년-7년	6년-9년

(2) 양형위원회 제57차 회의 재검토 지시사항

(가) 일반적 기준 4유형(국가지정문화재손상)

- 가중영역(3년-5년)을 국가지정문화재절도와 동일하게 ‘3년-6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나) 상습·누범·특수손괴 3유형(문화재특수손상)

- 국가지정문화재손상 유형의 가중영역 상향조정에 맞추어 문화재 특수손상의 가중영역의 형량범위를 상향조정(‘3년-6년’→ ‘3년-7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다)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유형(문화재특수손상치사)

- 문화재특수손상치사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아닌지
 - 만약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면 방화범죄 양형기준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처럼 고의가 있는 경우와 고의가 없는 경우로 소유형을 나누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살인죄에 준한 형량범위를 설정해야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량범위가 낮게 정해진 것은 아닌지

나. 국가지정문화재손상 및 문화재특수손상 형량범위 재검토

○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1) 국가지정문화재손상(일반적 기준 4유형)

- 가중영역의 상한을 6년으로 상향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3년 ↑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6년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은 국가지정문화재 손상·은닉과 국가지정문화재 절취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3년 이상 징역)
-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의 문화재절취를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포섭하여 아래와 같은 형량 권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 동일한 조항에서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인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
- 절도죄와 손괴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손괴보다 절도를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나, 문화재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손괴와 절도범죄는 불법의 정도에서 달리 취급하기 어려움

(2) 문화재특수손상(상습·누범·특수손괴 3유형)

- 가중영역의 상한을 7년으로 상향
- 위와 같이 상향조정한 국가지정문화재손상의 형량범위를 참고하되, 문화재특수손상의 법정형 상한이 지정문화재손상, 국가지정문화재손상보다 가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 상한을 7년으로 상향조정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3	문화재특수손상	↑2년~45년↓ / ↑3년~45년↓	1년-3년	2년-4년	3년-6년 7년

다. 문화재특수손상치사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여부

(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의의

-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 아니라 고의에 의하여 발생케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
- 중한 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
 - 예컨대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무기, 5년 이상 징역),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 교통방해치상죄(무기, 3년 이상 징역) 등

(나) 문화재특수손상치사의 경우

- 문화재특수손상치사와 살인죄의 법정형은 모두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으로 같으나, 살인죄의 경우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므로(형법 제256조), 살인죄에 정한 형이 더 무겁다고 할 수 있음
- 살인의 고의로 문화재특수손상의 범행을 저질러 관리자 또는 보관자를 살해한 자에 대하여는 문화재특수손상죄 및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여 결국 형이 무거운 살인죄로 처벌되며, 살인죄에 정한 형이 문화재특수손상치사의 형보다 무거운 이상 문화재특수손상치사에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개념을 인정할 이유가 없음
- 결국 문화재특수손상치사에 대하여 고의에 의한 사망의 결과 발생의 경우를 상정하여 살인죄 양형기준에 준한 형량범위를 설정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법정형을 고려한 형량범위 조정 여부

○ 아래 2안을 채택하여 기존 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일치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4	문화재특수손상치사	사형, 무기, 5년 ↑	2년6월-5년 3년-6년	4년-7년 5년-8년	6년-9년 7년-10년

(가) 1안(기존안) : ‘치사’ 범죄 양형기준 참조

- 결과적가중범의 성격이 동일한 ‘치사’범죄 양형기준 참조
- 다만, 참조 범죄들은 법정형이 무기, 5년 이상 징역으로 문화재특수손상치사보다 낮음

■ 특수공무방해치사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수공무방해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 피약취자등 치사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피약취자 등 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아동학대치사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학대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문화재특수손상치사의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되어 있으나 특수공무방해치사, 피약취자등치사, 아동학대치사보다 죄질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피약취자등치사, 아동학대치사와 동일하게 형량범위 설정

(나) 2안(수정안) :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 양형기준 참조

○ 법정형이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으로 동일한 범죄 양형기준

■ 식품보건의범죄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5유형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0년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4유형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4	치사 후 유기도주 (유기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 법정형에 사형을 규정해 문화재특수손상치사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한 하고자 한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정형이 낮고 행위형태가 동일한 범죄보다는 행위형태가 다르더라도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조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

○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5유형의 형량범위를 참조

○ 다만, 감경영역 형량범위를 ‘4년-7년’으로 할 경우 기본영역과의 중첩범위가 너무 넓고 사안에 따라 유연한 양형을 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감경역역을 ‘3년-6년’으로 조정

(3) 문화재특수손상치상 형량범위 상향 여부

(가) 검토 배경

○ 법정형에 큰 차이가 없는 문화재특수손상치사의 형량범위를 상향할 경우 문화재특수손상치상의 형량범위도 상향하여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없는지

(나) 기존 안 및 해당논거

○ 법정형(무기, 5년 이상 징역) 동일한 ‘치상’범죄 양형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1년

■ 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피약취·유인미성년자 상해등/인질상해·치상	2년6월 - 4년6월	4년 - 6년	5년 - 8년

■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치상/ 강간치상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기본적으로 13세 이상 강제추행치상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되, 기본영역 상한을 법정형의 하한과 일치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기본영역 상한과 가중영역 상하한을 상향 조정

- 감경 : 2년6월~~4년~~, 기본 : 3년~~6년~~, 가중 : 5년~~8년~~

(다) 논의 결과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존의 형량범위를 유지하기로 의견일치

- 문화재특수손상치상의 경우 문화재 보호라는 사회적 법익과 관리자에 대한 신체적 법익 침해를 함께 고려하여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기는 하나,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피약취·유인미성년자 상해, 강간치상 등에 비해서는 개인적 법익 침해의 위험성 및 정도, 사회안전에 대한 위협의 정도 및 죄질이 높다고 할 수 없음
- 문화재특수손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의 경위 및 정도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기본영역 구간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문화재특수손상치상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기는 하나⁶⁾,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경우에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점을
소유형 분류나 형량범위 설정에 특별히 반영하지 않았음

라. 소결 - 검토결과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01 일반적 기준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등	3년 ↓	-6월	4월-10월	8월-1년6월
2	공익건조물파괴	10년 ↓	4월-1년	8월-2년	1년6월-4년
3	지정문화재손상 등	2년 ↑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6월-4년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3년 ↑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6년

02 상습·누범·특수손괴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누범·특수손괴등	1년 ↑	4월-10월	8월-1년6월	1년-2년
2	상습특수·누범특수손괴	2년 ↑	6월-2년	1년-3년	2년-4년
3	문화재특수손상	↑ 2년~45년 ↓ / ↑ 3년~45년 ↓	1년-3년	2년-4년	3년-6년 7년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 치상	1년 ↑	6월-1년	10월-2년	1년6월-3년

6) 중한 결과인 폭처범(집단·흉기·휴대등)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으로, 상해의 고의로 문화재 특수손상의 범행을 저질러 관리자 또는 보관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상해 결과에 과실이 있는 경우(문화재특수손상치상죄 : 무기, 5년 이상 징역)보다 가볍게 처벌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2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 치사	3년 ↑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3	문화재특수손상치상	무기, 5년 ↑	2년6월-4년	3년-6년	5년-8년
4	문화재특수손상치사	사형, 무기, 5년 ↑	2년6월-5년 3년-6년	4년-7년 5년-8년	6년-9년 7년-10년

7. 권리행사방해범죄 형량범위 논의 결과

가. 양형위원회 재검토 지시사항

(1) 지난 전문위원 제82차 전체회의 논의결과

■ 상습·누범·특수 강요 범죄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3	상습·누범·특수 강요	2년 ↑	6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상습특수·누범특수 강요	3년 ↑			

(2) 양형위원회 제57차 회의 재검토 지시사항

- 법정형에 비추어 볼 때 형량범위를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나. 검토자료

(1) 폭처법 상 상습·누범·특수 범행 양형기준

죄명	유형	법정형	형량범위		
			감경	기본	가중
상해	상습·누범·특수	3년 ↑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상습특수·누범특수	5년 ↑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공갈	상습·누범·특수	3년 ↑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상습특수·누범특수	5년 ↑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체포 감금	상습·누범·특수	2년 ↑	6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상습특수·누범특수	3년 ↑			

폭행	상습·누범·특수	1년 ↑	4월 - 1년2월	6월 - 1년10월	8월 - 2년4월
	상습특수·누범특수	2년 ↑			
협박	상습·누범·특수	1년 ↑	4월 - 1년	6월 - 1년6월	8월 - 2년
	상습특수·누범특수	2년 ↑			

(2) 형량 분포

단위: 명, %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5	16	18	24	30		
폭처법 (특수강요)	수	0	0	0	0	0	0	0	10	7	1	0	1	1	0	20	12.05
	비율	0.0	0.0	0.0	0.0	0.0	0.0	0.0	50.0	35.0	5.0	0.0	5.0	5.0	0.0	100.0	

- 법정형이 상습·누범·특수 폭행 및 협박보다는 높고, 상습·누범·특수 상해보다는 낮으므로 형량범위도 그에 상응하여 설정할 필요
- 실제 양형사례는 징역 10월에서 2년 사이에 분포

다. 검토

- 아래 3안에 따라 형량범위를 상향하기로 의견일치

(1) 1안(기존안) : 체포·감금죄와 동일하게 설정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3	상습·누범·특수 강요	6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상습특수·누범특수 강요			

- 처벌 조항과 법정형이 동일하며 보호법익도 유사하고, 양형기준에서 상습·누범·특수(2년 이상)와 상습특수·누범특수(3년 이상)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점도 같음
- 실제 두 범죄에 대한 평균 선고형량도 거의 비슷함

(2) 2안(수정안) : 체포·감금죄를 기준으로 하되, 감경영역 하한과 가중영역 상한을 상향조정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3	상습·누범·특수 강요	10월 - 2년	1년 - 3년	2년 - 5년
	상습특수·누범특수 강요			

- 감경영역의 하한은 실제 선고 사례 중 가장 낮은 형과 같은 징역 10월로 정함
- 가중영역은 불법성이 큰 사안에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상한도 상향 조정하여 형량구간을 넓힘

(3) 3안(수정안) : 상습·누범·특수상해죄보다 낮게 설정하되 1안 보다는 각 영역의 형량범위를 상향조정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3	상습·누범·특수 강요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상습특수·누범특수 강요			

-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인 지정문화재절도(1년-2년6월 / 1년6월-3년 / 2년6월-4년), 일반건조물 등 방화(1년-2년 / 1년6월-3년 / 2년6월-5년)에 대한 형량구간을 참조함
- 법정형이 2년 또는 3년 이상인 범죄의 기본영역 하한은 대부분 법정형 하한을 작량감경 한 형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기본영역의 하한을 징역 1년6월로 설정하고, 기본영역의 상한은 징역 3년으로 정함)
- 가중영역의 하한은 상습·누범·특수 강요의 법정형 하한보다 높은 징역 2년6월로 설정
- 실무상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징역 10월을 감경영역에 포섭할 수 있도록 감경영역의 하한은 징역 10월로 정함

7) 기본영역의 상한이 상습특수·누범특수 강요의 법정형 하한과 같은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상습특수·누범특수 강요는 실무상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는 필요한 경우 양형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8. 장물범죄 유형분류 논의 결과

가. 특별재산 장물 유형의 포함범위 관련 기존 논의경과

(1) ‘일반장물’의 소유형 분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2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2)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포함범위에 관한 전문위원 의견대립

- 전문위원 제81차 회의에서는 ‘일반장물’의 소유형인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의 포함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대립이 있었음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의 절도
- 금융기관(특경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귀금속 등에 대한 절도
-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절도
-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의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절도
- 송유관(송유관 안전관리법이 규정하는 송유관) 내 석유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절도
-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 (가) 소수의견(강동혁, 최진녕, 황병헌) - 재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그 자체로 명확히 드러나는 범죄들에 한정(금융 기관 절도, 임산물 절도, 송유관 절도 제외)

- 본범의 처벌가치와의 구분

- 절도범죄에서 특별재산으로 분류된 범죄 중에는 재산 그 자체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보다는 범행의 대담성, 위험성 등 범행방법과 태양 속의 처벌가치가 보다 크게 반영된 범죄(금융기관 절도, 송유관 내 석유절도), 재산 그 자체의 일정한 보호가치에 더하여 범행의 장소, 수단, 기회, 시간, 면적 등에 따른 여러 가중적 구성요건이 유형분류에 반영된 범죄(특가범상 임산물 절도) 등이 있는데, 재산 그 자체에서 재산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가치 평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위 범죄들의 경우 장물범이 본범에 일정 정도 관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본범이 완료된 이후의 장물단계에서 그 불법성과 처벌가치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움

○ 실무례

- 실무례를 검토해 보더라도,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운반하거나 취득, 알선한 장물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본범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징역 8월 내지 1년 범위에서 선고형량이 정해지는 경향을 보임

(나) 다수의견(강수진, 김현아, 김혜정, 오기찬, 이재권) - 절도범죄에서 규정한 모든 유형 포함

-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재산 여부는 사회·문화·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 범정형 등을 종합하여 분류한 것으로,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장물범죄에서도 유효하게 고려하는 것이 양형기준 사이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
- 장물범죄의 특별재산 포함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절도범죄 기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움
- 재산 그 자체에서 재산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가치 평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범행방법과 태양 속의 처벌가치가 주로 반영되어 특별재산으로 분류된 범죄의 경우에는, 장물죄 범행 당시 해당 장물이 절도죄의 특별재산에 해당하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을

요구하는 문구를 유형정의 등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장물범의 불법성 및 처벌가치 감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3) 양형위원회 제57차 회의 논의 결과

-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지만 전문위원단의 다수의견에 찬성하는 견해가 다소 많아 절도범죄에서 규정한 모든 유형을 포함시키기로 논의가 정리됨

나. 재논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제기

-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유형의 포함범위를 정함에 있어 지난 전문위원 회의 및 양형위원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대하여 추가 검토할 필요
- 지금까지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의 논의를 함에 있어 본범이 절도범인 경우만을 상정하여 절도죄와 장물죄 양형기준 상호간의 일관성 위주로 논의해 왔으나, 본범이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등 다른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경우 다수의견과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게 됨
- 즉 강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범죄 등에는 특별재산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으며 양형기준에서도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지 않음
- 그런데 절도범죄에서 재산 그 자체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절도범행의 대담성, 위험성 등 범행방법에 따른 처벌가치를 크게 반영해 특별재산으로 분류한 물건(금융기관 절도, 송유관 내 석유절도, 특가법상 임산물 절도)을 행위태양 및 범죄속성이 다른 재산범죄의 장물범에 대하여 까지 특별재산으로 취급해 가중처벌한다면, 오히려 양형기준의 일관성 및 체계적합성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반면 재산 그 자체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보

아 특별재산으로 분류한 물건(즉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물건)의 경우에는, 본범이 절도범인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추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장물범 자체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장물범죄의 특별재산으로 취급해 가중처벌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음

- 사기, 횡령·배임, 공갈 등의 재산범죄의 경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양형기준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음 ⇨ 범행으로 침해당한 재산적 피해가 클수록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취지 ⇨ 절도 이외의 재산범죄에 특별재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그 자체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에 대해 유형분류를 통해 보다 무거운 형량범위를 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

다. 전문위원단 재논의 결과

(가) 1안(종전 소수의견) - 모든 재산범죄를 본범으로 하고,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그 자체로 명확히 드러나는 것만을 특별재산에 포함(금융기관 절도, 임산물 절도, 송유관 절도 제외) : 강동혁, 노수환, 박지선, 범현, 이재권, 이진국, 황병현

- 논거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음

(나) 2안(종전 다수의견 유사) - 본범을 절도범죄로 한정하고, 절도범죄에서 규정한 모든 유형을 특별재산에 포함 : 오기찬

- 본범을 절도범죄로 한정하는 것 외에는 종전 다수의견과 동일
-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재산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장물범죄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절도범죄 기준 중 일부를

제외할 이유 없음

- 재산 그 자체에서 재산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가치 평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도, 장물죄 범행 당시 해당 장물이 절도죄의 특별재산에 해당하는 사정을 인식하였다면 규범적으로 가중 처벌 필요
- 다만, 특별재산에 대하여는 절도죄에 있어서만 그 가중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 강도, 사기, 횡령의 경우에는 그 가중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바, 가중 규정이 없는 본범에 대한 장물범까지 특별재산에 대한 가중처벌을 확대할 수는 없음

(다) 3안(수정의견) -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소유형을 없애고 문화재장물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유형에 서술식 기준을 두어 가중된 법정형을 형량범위에 반영. 절도죄의 특별재산 부분은 양형인자에 반영 : 김현아, 최준혁

- 장물범죄의 경우 장물의 가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상 장물죄 밖에 없음 ⇨ 입법자가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유형을 달리하여 중한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한편 절도죄의 특별재산 부분을 장물범죄 양형인자에 반영함으로써 절도범죄 양형기준과의 일관성 고려